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7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이종욱

김승수 · 김대식 · 윤한홍

권성동 · 김소희 · 박수영

고동진 • 박충권 • 강대식

송언석 • 권영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 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 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 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1조의2(주권의 사전 모집 또는 매출) ①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입희망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제1항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수량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1조의2에 따른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1조의2에 따른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u><신 설></u> | 제121조의2(주권의 사전 모집 또 는 매출) ① 발행인은 증권신 |
|--------------------|--|
| | 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 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 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입 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 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 출하기 이전에 제1항의 전문투 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 의 수량 일부를 모집하거나 매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 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을 적용 |
| |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 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 7 용) ① (생 략)
 -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 1.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구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그 밖

| |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 |
|---|------------------------|
| |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
| | <u>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u> |
| 제 | 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 |
| | 용) ① (현행과 같음) |
| | ② |
| | |
| | |
| | |
| | |
| | |
| | <u>다만, 제121조의2에 따른</u> |
| |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 3. (현행과 같음)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 |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 |
| | 위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 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 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 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 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 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 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 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 <u>다만,</u> 제121조의2 |
|--------------------|
| 에 따른 주권의 모집 또는 매 |
| 출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